

예산총칙

2015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81,181,420	23,435,443
일반회계	676,382,023	20,291,461
특별회계	104,799,397	3,143,982
공기업특별회계	88,834,387	2,665,032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7,907,989	837,24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4,564,313	1,336,929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6,362,085	490,863
기타특별회계	15,965,010	478,950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20,000	600
강릉시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547,240	16,417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437,816	43,134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4,134,621	124,039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173,575	95,207
강릉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2,675,698	80,271
강릉시기반시설특별회계	422,670	12,680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3,553,390	106,602

제 2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5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2015년도 계속비이월 사업조서는 별첨 "계속비이월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1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5,462,403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2015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7,3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비목 및 채무상환원리금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얻은것으로 한다.

제 8 조 (간주처리)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